



11.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취득의 취득세 감면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

1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취득의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같은 조 제3호다목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

[사 례] 농협에 대한 현물출자시 감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같은 법에서는 물적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당초 사업의 일부를 현물출자방식을 통하여 “(주)농협○○○”를 설립함으로써 사업을 이전하였으며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 말하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현물출자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119조제1항제7호 및 제120조제1항제6호의 취득·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할 수 있음 (행안부 도세-302, 2008. 4. 2)

1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취득의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인바,

여기서 첫째,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그 기준고시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기준고시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이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의하여 시정에 필요한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명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의 양도와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한한다.

둘째, 계약이전결정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을 때에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인수금융기관)이 이를 승계하는바, 금융위원회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영업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계약이전결정이 아닌 신탁재산의 이전결정은 이미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1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취득의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

1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취득의 취득세 감면

수산업협동조합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적기시정조치 등의 감면과 같다.

1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취득의 취득세 감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

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취득의 취득세 50%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비업무용자산 및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의 관리·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회사등

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인수정리를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50%감면한다. 이 경우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부동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8.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취득의 취득세 감면. 다만, 제37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감면요건

1. 피인수 내국법인의 요건

- ①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양도·양수일 것
- ② 인수대가(피인수법인이 인수법인으로부터 그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합계액)중 의결권 있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95% 이상일 것
- ③ 주주 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 ④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인수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 인수법인의 요건

인수법인에게 포괄적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인수 주식등을 받고 청산

(2) 추징요건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인수법인(결손금 등을 승계받은 경우를 포함)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피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19. 다음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을 공제하고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조특법시행령제116조⑦)

다만, 해당 재산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 사치성 재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에서 3배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에서 5배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치성재산인 부동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대도시내 법인시설등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및 그에 따른 추정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사례 】 부동산투자집합기구의 취득부동산에 대한 추정 여부 판단

추정은 일단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516 판결 참조)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별도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면제된 지방세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것(대법원 2005.9.29. 2003두9374 판결 및 2008.4.24. 2008두839 판결 참조)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6항제2호·제120조제4항제2호 및 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부동산투자집합기구가 간접투자재산을 취득·등기한 경우에는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 감면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규정(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의 처분제한)을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등록세를 추정하거나 분리과세한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경정하여 추정할 수는 없음(행안부 지방세운영-4691, 2009. 11. 3)

【 사례 】 등록세 증과세차액의 농특세 과세 대상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7항에서 투자회사,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등록세 감면세액에 대한 100분의 20의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회사 등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내에서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적용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율과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농어촌특별세」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세의 감면세액으로 볼 수 없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행안부 지방세운영과-1007, 2010. 3. 12)

21.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 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감면요건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 · 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일 것

② 사업 양도 · 양수의 방법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상일 것을 의미한다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 가액 $\geq$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2) 추정요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사례 】 개인사업전환시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당초 개인기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투여한 현물출자액 이외 현금출자액도 법인의 자본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우리 부 지방세운영과-2001, 2008.10.30. 질의 회신 참조)이나, 개인사업자가 직접 투여하지 아니한 다른 주주의 투여지분에 해당하는 출자액은 법인의 자본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국심2005중2993, 2005.11.1 결정 참조)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에 따른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행안부 지방세운영과-344, 2010. 1. 26)

|| 판례 || 현물출자 재산의 범위와 광업권 감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는 현물출자를 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구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재산 중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과 그 현물출자한 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그 범위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이연 규정인 구 법 제38조에서 정한 자산의 범위에 광업권 등의 무형고정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재산'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재산의 취득이 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이라 함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재산'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적용 대상인 재산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3695 판결 참조).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인 소외 회사의 현물출자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광업권이 구 법제12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두12494, 2008. 10. 23)

22.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1) 감면요건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록 과점주주의 과세요건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추징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나)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위 ①의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① 또는 ②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방법의 법인전환 절차 비교표

구 분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개 념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	채권계약으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 되는 것
법인 설립 절차	개인기업 결산 및 자산 감정	법인의 설립
	▼	▼
	현물출자가액 및 법인자본금 결정	사업양수도계약의 체결
	▼	▼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양도할 자산 감정
	▼	▼
	감사인 선임 및 조사(상법제299조)	법인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세무서)
	▼	▼
	법원보고 및 인가(상법제299조)	개인기업 결산
	▼	▼
	법인설립등기	개인기업 폐업신고

[사 례] 금융지주회사의 등록세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9호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동 조문은 삭제된 상태이고, 입법취지상 제38조의2를 오기)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함) 제119조제1항제19호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고 개정되었으며, 같은 법 부칙

제56조제1항에서는 제119조제1항제19호의 개정 규정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2009.1.1.) 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부칙 제23조에서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2항 각 호의 외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9호 감면요건인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2에 따라 주식을 이전 받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는 잘못된 조문인용(제38조의2 → 제38조)과 인용조문상의 감면주체(내국인)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주식을 이전·교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으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고 동 개정내용을 2009.1.1. 이후 등기하는 분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2009년 중에 주식을 이전·교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다(행안부 지방세운영-35, 2010. 1. 5)

[사례] 지주회사에 대한 감면 적용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함(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22, 2009. 1. 5)

- 설립등기 당시에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었던 회사가 같은 해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었고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을 갖추었으나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되는지?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08-0353)

III. 과점주주에 대한 감면적용

(1) 적용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

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과점주주로서 과세요건은 성립하였으나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므로 감면으로 보아야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7.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사례] 지주회사 과점주주의 감면 적용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점주주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환부청구를 전제로 질의하신 사항이라면 2005. 9. 22일에 000컨트리클럽(주)가 설립되고, 같은 해 12. 26일에 (주)00의 주식을 100% 취득한 경우로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귀사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고 과세권자도 그렇게 판단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서 이의 환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것인지 등 사실조사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임(행안부 지방세운영-62, 2011. 1. 6)

[사례] 사모펀드에 대한 과점주주 감면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행안부 지방세운영과-571, 2010. 2. 8)

[사례] 지주회사에 대한 과점주주의 감면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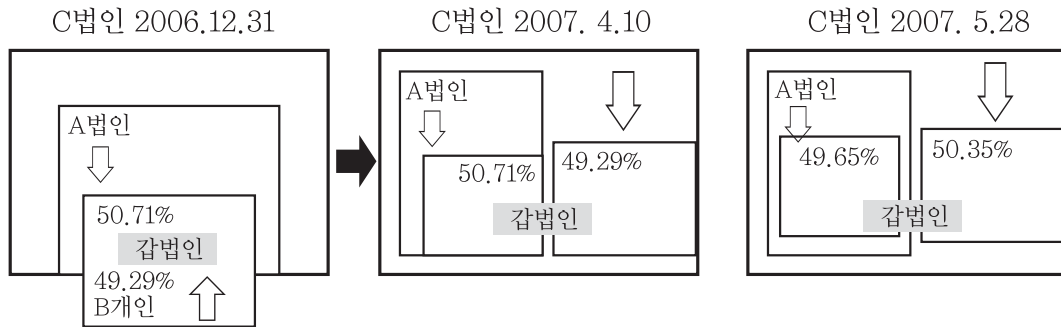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과점주

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서는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의3호에서는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의4호에서는 "사업관련손자회사"라 함은 자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로서 그 사업내용이 당해 자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되거나"의 의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지주 회사가 됨과 동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의미는 이미 지주회사인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위 사례의 경우 이미 지주회사 상태인 C법인이 2007.4.10. 자회사가 아닌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당해 과점주주의 의제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1154, 2009. 3. 20)

〈 사실관계 〉

- 2006.12.31 : C 법인의 100% 자회사인 A법인에서 갑법인의 주식 50.7% 소유
- 2007.4.10. : C 법인에서 갑 법인의 발행주식 49.3%를 취득함으로써 자회사인 A법인의 지분율을 포함하여 갑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됨(과점주주성립)
- 2007.5.28. : 납세자인 C 법인은 2007.5.28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갑 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함

〈지분변동 흐름〉



[사 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과점주주감면 적용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276조제1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조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주회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의2에서는 지주회사 등의 각종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66조 등에서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벌금 등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단순한 출자구조를 갖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연쇄도산 감소 등 기업소유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지방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는 기업의 경영권을 한시적으로 확보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투자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항구적 지배목적에 지닌 일반지주회사와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자본시장법에서도 10년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대상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입니다.

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등을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공정거래법 제1조)을 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경우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기준을 갖추면 동시에 각종 행위제한, 의무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벌금 등에 대한 규제 등을 적용 받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적용이 배제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행안부 지방세운영-5351, 2009. 12. 18)

(2) 주식발행법인과 과점주주와의 감면관계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발행법인의 보유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비과세·감면할 경우에도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 현행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감면하는 것이므로 이때 비과세·감면의 판단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검토대상이다.

①견해는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비과세·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감면규정을 별도로 규정(예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하여야 비과세·감면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취득하더라도 비과세·감면되는 물건(예 : 1년 미만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만 비과세·감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취득시 감면,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시 감면 등은 감면되지 아니한다.

②견해는 주식발행법인을 기준으로 비과세·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식발행법인의 취득시 비과세·감면되는 경우도 비과세·감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①견해(과점주주 기준)와 ②견해(주식발행법인 기준)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볼 때 ①견해(과점주주 기준)는 납세의무성립은 과점주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비과세·감면대상 여부도 과점주주

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조세법상 과세요건 판단 등이 명확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나, 간주취득의 의미를 형해화할 소지가 있는데 비하여, ②견해(주식발행법인 기준)는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는 주식발행법인의 자산 등에 간주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주취득에 대한 과세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현재 판례에서는 과점주주와 주식발행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로서 과점주주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 판례 || 과점주주의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시 납세의무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99.82%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정○○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과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부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망인의 주식소유비율이 위 상속 전·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99.82%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을 적용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대법원 2007두6588, 2008.2.29.)

—상속지분으로 지분전체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함.

(2) 과점주주의 감면대상과세물건의 범위

과점주주의 취득은 발행법인의 주식을 50% 초과를 취득함으로써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의제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 취득의 주체는 주식발행법인이지만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의 지분비율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물건 중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취득대상물건이 지방세법 또는 타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비과세 감면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첫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은 간주하는 것이므로 주식발행법

인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하면 첫째, 절대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취득물건이 취득세면세점(과표가 50만원) 이하의 물건이거나 누구든지 취득하더라도 비과세하는 물건(예 :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의 가설건축물의 취득)인 경우에는 과점주주라도 비과세하거나 면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감면하거나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법인합병으로 주식을 교부받음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다.

둘째, 상대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대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주식취득에 대하여 별도의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주식발행법인은 감면대상법인이기 때문에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면제 또는 감면을 받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산업단지 내 공장용부동산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게 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하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간주취득하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 등을 공장용으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IV. 창업중소기업 감면

1. 감면요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또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를 말한다.

-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감면 : 전액감면
 - ①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 ②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
 - ③ 사업용재산
 - ④ 2년 이내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할 것
- 재산세 감면 : 100분의 50 감면
 - ①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해당될 것
 - ② 창업일로부터 5년간(5과세연도) 감면

2.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1) 창업의 의의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창업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창업의 해당 여

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창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전의 경우 창업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창업」을 판단하였으나 차이가 있는 것이다.

① 기업을 원시적으로 새로이 설립할 것

② 기업이 새로이 설립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③ 창업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에 해당될 것

④ 새로이 설립된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것

(2)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존의 사업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승계, 양수,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업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국내에 공장의 신설 등의 효과가 없으므로 지방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의 범위에서도 제외된다. 이 경우 동종사업의 판단은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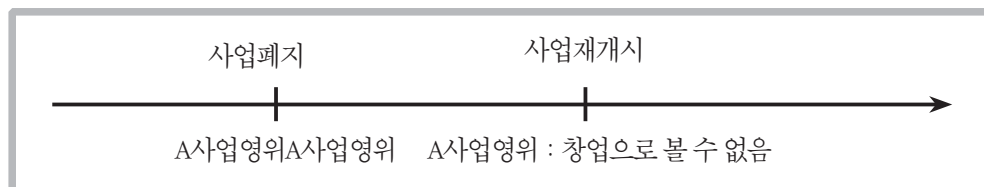
단순한 기업의 조직변경 등 형식상 창업절차만 있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창업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조직변경 전후 업종이 다른 경우는 변경 전의 사업을 폐지하고 변경 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창업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일 뿐 사업의 영속성이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사업자 자체가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의 조직변경은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법인 전환형태이므로 이 또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라면 창업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유형]

- ①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상호간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일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후 동종사업을 재개하더라도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만 폐업 후에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 전의 사업과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을 폐지하고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라도 시간적으로 보아 새로운 창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유형]

- ①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②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전의 장소에는 그 사업활동을 폐지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그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등

(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은 기업을 원시적으로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기업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기업이 원시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사례]

- ① 기존에 설립된 기업이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 ② 기존에 설립된 기업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3) 창업일의 기준

- 법 인 : 법인설립등기일
- 개 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과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일」 중 빠른 날
 - － 사업의 개시일
 - 제 조 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 광 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 기타사업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창업일에 대한 판단은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이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따라서 사실과세원칙에 의거 창업을 판단하여야 하나 「사실상 창업일」을 고려하되 「형식적 기준」인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유의해야 한다.

3. 창업중소기업 등의 업종 및 범위

첫째, 창업중소기업 등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업종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열거한 업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
- 물류산업(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둘째,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범위기준(중소기업기준) 이내이어야 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

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례] 창업의 범위와 감면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콩나물재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콩나물재배업은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두부 및 유사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사업자의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사업의 추가행위에 해당되어 신규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행자부 세정-676, 2004. 4. 3)

[사례] 운송사업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운영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19조제3항1호 및 제120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8항에 물류산업이란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이하생략)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립한 법인이 화물운송(용달화물)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이라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됨(행자부 세정-779, 2004. 4. 12)

[사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 판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은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관광호텔은 상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임(행자부 세정-4670,

2004. 12. 21)

4. 창업중소기업 등의 요건

(1) 창업중소기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의미하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전입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창업 후 2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받는 날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별표 1 참조)]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의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2)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지역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면 이에 해당된다.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다시 연장받는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까지의 예비 벤처중소기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사례 】 화물자동차 신규공급 불허용시 창업에 해당여부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4조의 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89호를 보면 일부특수차량(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등)을 제외한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공급이 불가능한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사업을 하고자 그 사업을 양수받았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양수자는 양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이는 종전 사업의 승계라 보아지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89호에 따른 공급 가능한 특수차량(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등) 운송사업으로 신규 허가를 받았고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공급이 불가능한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자로부터 신규 공급이 불가능한 화물자동차사업을 양수받았다면 양수한 사업에 관하여는 기존 양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과세감면을 할 수 없음(행안부 도세-83, 2008. 3. 18)

【 사례 】 창업의 범위와 감면 대상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외형상 창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창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고 조세 감면 혜택에서 배제하겠다는 규정이지, 단지 형식상 창업 이후에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였거나 목적사업이 추가되었다는 이유로 바로 조세감면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서울고법 2007누26454, 2008.5.22. 참조)이므로 갑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창업한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감면대상 업종을 계속해서 영위하면서 당해 사업(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재산(흡수합병된 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경우에는 제외)을 벤처기업으로 최초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경우라면, 갑 법인이 을 법인을 흡수합병한 이후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함(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2084, 2009. 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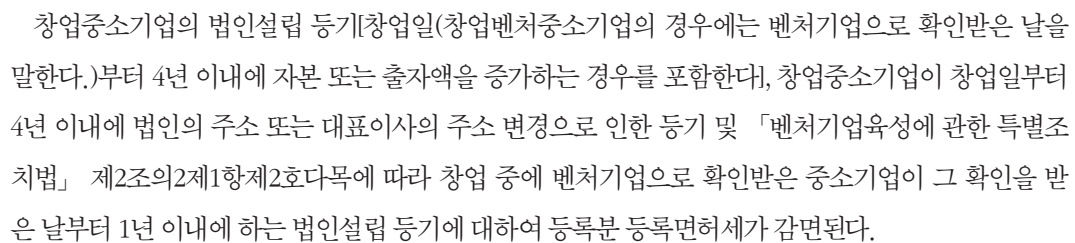
[사례] 창업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등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서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동조 동항 동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양수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창업으로 인정한 것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동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8두14838, 2008.10.2. 판결 참조)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존 사업자에게 그 사업을 양수 받았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록 사업개시 당시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100분의 30이하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행안부 지방세운영 4271, 2009. 10. 9)

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내용

(1) 감면기간

창업중소기업 등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하는 기간은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이며 감면기간의 개시일은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



창업일 벤처확인일 4년 2년(벤처확인일로부터 기산)

총감면기간

제1차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2001.6.30) 전에 기존 벤처기업의 지위에서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절차나 벤처기업 평가기관의 현장실사 등 평가기간의 소요로 확인서 발급이 지체되어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까지 발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벤처기업으로 계속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제1차 벤처기업확인일(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

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행자부 세정-2887, 2004. 9. 4)

[사례] 창업의 범위와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사업의 개시일)의 규정에 따라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중 빠른 날을 창업일로 보는 것이므로 창업자가 개인으로서 사업을 준비중인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2004.6.29)한 후 사업자 등록(2004.7.14)을 한 경우라면 창업일(2004.7.14) 이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2284, 2004. 8.2)

[사례] 창업중소기업의 연부취득중인 부동산의 등록세 감면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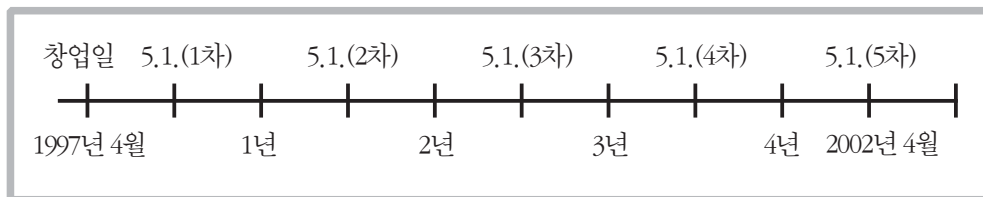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1997년도 :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규정에서의 등록세 감면요건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재산을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이 1996년 12월에 사업용재산에 대한 연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용재산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등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행자부 세정- 214, 2004. 1. 15)

(2) 재산세 등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5년간은 재산세의 5과세년도를 의미하며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도 잔여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창업중소기업이 중소기업통합 및 법인전환한 경우 통합법인 및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의 경우 취득세 등은 감면되지 아니한다.

[재산세의 감면범위]



재산세와 병기고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받은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 내에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3) 감면대상 : 사업용재산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해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과 무관한 재산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감면한 세액도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감면대상 사업용재산의 범위는 「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기계장비, 선박저당권 및 전세권 등도 사업용으로 공여되는 경우 모두 사업용재산에 포함된다. 부동산의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의 공장, 사무소 등과 이와 같은 구내에 있는 부속시설(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한 경우는 제외)은 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되고 창업중소기업 등의 공장 구외에 있는 부동산 등은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차량 등은 창업중소기업 명의로 등록되어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례] 창업중소기업의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취득세 등 면제대상 재산의 범위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등기한 사업용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의 종류나 구입 대수 및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승용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차량 구입 대수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기준으로 당초 면제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다만, 면제후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 가능)됨(행안부 지방세운영 48381, 2009. 11. 13)

6. 추정 요건

(1) 정당한 사유의 판단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천재지변 등 그 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말하고, 법인 내부의 사정으로는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첫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대지와 건물의 전임차인들에 대하여 즉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이 그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의 소요기간으로 4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이다.

[사례] 창업중소기업의 정당한 사유 판단

당해 사업자가 우레탄 및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2002.8.25 농지(전)를 취득한 후 농지법 등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3.5.24 당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반환(처분)한 경우라면 토지를 처분하게 된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내부적인 사정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행자부 세정-2320, 2004. 8. 3)

(2) 추정기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7. 지방세 감면신청과 신고납부

(1) 감면신청

창업중소기업 등으로서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제10항에 의거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부감면신청절차나 서식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감면할 수가 있으며 지방세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세는 등기·등록 신청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감면 여부에 대한 통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감면대상임에도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과오납한 경우 환급대상에 해당된다.

2) 중복감면의 배제

창업중소기업이 산업단지 내에서 신축하는 공장용부동산을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재산세가 전액 면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은 선택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복적으로는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 다만, 감면법령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 과세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의거 감면 :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세액의 20%)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감면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예시] ○○지방산업단지 내에서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용부동산을 2억원에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취득·등기시의 취득세의 감면범위

[농어촌특별세액 산출]

① 지방세법 제78조에 의한 감면신청시

- 2억원 $\times$ 4% = 800만원[취득세 : 전액면제(800만원)]
- 800만원 $\times$ 20% = 160만원(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
- 총납부세액 : 16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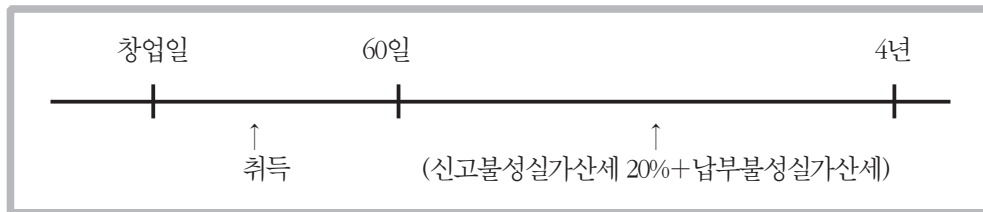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 의거 감면신청시

- 2억원 $\times$ 4% = 800만원[취득세 : 전액면제(800만원)]
- 800만원 $\times$ 20% = 160만원(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총납부세액 : 없음.

3) 신고납부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납부기간 내 신고불이행시 납부할 세액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율(1일 3/10,000)에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후 당해 과

세물건이 취득세부과대상 또는 추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예시] 부동산을 2억원에 창업중소기업자가 취득하였으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정된 경우 취득세의 추정세액(미신고 납부시)

[추정세액 산출]

— 2억원 $\times$ 4% = 800만원(취득세액)

— 800만원 $\times$ 20% = 160만원(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일자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

— 총부과세액 : 960만원

창업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정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부과되며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율(1일 3/10,000)에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 판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 추정사유 부존재판단

법인의 설립이 중소기업창업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과세대상토지와 과세대상건물의 각 취득 및 등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면제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가 그 이후 위 각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면제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것을 알고 이를 부과한 처분으로서, 당초에는 면제요건을 구비하였다가 그 이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추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추정처분과는 그 과

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고, 지방세 과세예고 당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조항을 기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예고 당시 “... 개인업체가 창업감면기간 내에 폐업하였으므로 창업이 아닌 법인전환에 해당되어 기 감면한 취·등록세를 과세하고자 한다”라고 예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과세권자가 과세예고를 하는 이유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권자의 과세사실에 대하여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인데, 위 과세예고에 ‘원고 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전환’ 이기 때문이라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을 대비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과세예고에 근거 법령조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과세대상토지와 과세대상건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본래의 부과처분으로 적법한 처분이다.(대법원 2008두14838, 2008. 11. 23)

[사 례] 창업중소기업의 추징 대상 판단

공사착공이라 함은 기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기초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공사준비작업까지 포함하는 것(감심2001-38, 2001.4.10 결정 참조)은 아니라 할 것이며, 자금사정 등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법인 스스로 착공을 연기하고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처분청에서 당해 착공연기신청에 대하여 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감심2001-27, 2001.3.20. 결정 참조)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대상 부동산이 위 법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법상 추징규정이 없는 이상 이미 감면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두839 판결 참조)임(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1525, 2009. 4. 17)

【 사례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추정요건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징은 일단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에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516 판결 참조)이므로, 추징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면제요건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추징요건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감면에 있어 벤처기업 확인에 관한 사항은 면제요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납세의무성립 당시 면제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라면 일단 면제를 하여야 할 것이고, 동 면제요건에 대하여 사후관리 측면에서 별도의 추징규정(예: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확인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세액을 추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유로 기 면제한 취득·등록세를 추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을 취득·등기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취득·등록세를 면제 받은 후 당해 사업용재산을 당초 사업의 목적대로 계속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록 추징 사후관리 기간(2년)내에 벤처기업인증 연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제받은 취득·등록세를 추징하기는 곤란함(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 4202, 2009. 10. 5) 